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887
----------	------

제안연월일 : 2025. 6. 18.

제안자 :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하며, 단기적 대응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간 통합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연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연계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 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다른 조례를 재정·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 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저출산 대응정책 · 고령사회 대응정책 · 인구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제8조)

바. 저출산 · 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제9조)

사. 조사 및 연구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

아. 협력단체 지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대응 정책)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출산 지원
3. 양육·보육·교육 지원
4. 일자리·주거 지원
5. 다자녀 가정 지원
6.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7. 그 밖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7조(고령사회 대응 정책)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2. 건강증진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사회활동 장려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8조(인구정책)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단체 지원) ①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